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15
----------	-----

발의년월일 : 2019년 4월 1일
발 의 자 : 박상구 의원 (1명)
찬 성 자 : 우형찬, 여 명, 이승미,
이은주, 송아량, 오현정,
추승우, 이정인, 김상훈,
노식래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음.

이에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20면 이하 소규모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결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또한 「주차장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과 이용요금이 무료인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신 설></p>	<p><u>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p> <p><u>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과 이용요금이 무료인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서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조례안 제9조의2에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 신축 비용

나. 전제

- 노외주차장 신축비용은 2020년도 단년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2019년 1월까지 자치구별 소규모 노외주차장 수요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비용추계 기간동안 별도 주차장 수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기간 이후 추가수요 발생 시 비용발생 가능성 있음
- 시비지원비율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60%로 가정함

다. 방법

- 서울시가 2019년 1월에 자치구에서 파악한 주차장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6,93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20\text{면 이하 소규모 노외주차장 신축비용})_i$

※ 2020년도 단년도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	-	-	-	-	-	-
세입		소계 (a)	-	-	-	-	-	-
세출	조례안 제4조의2	소규모 노외 주차장 신축비용	16,930,000	-	-	-	-	16,930,000
		소계 (b)	16,930,000	-	-	-	-	16,930,000
		□ 총 비용 (b-a)	16,930,000	-	-	-	-	16,930,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20면 이하 소규모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신축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6,93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20면 이하 소규모 노외 주차장 신축비용)_i

※ 2020년도 단년도 사업

- 세부 산출 내역

- 서울시 20면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 신축 수요 현황(2019.3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위치	주차 면수	사업비(백만원)	
				계	시비
1	성동구	송정동 ***번지	11	2,280	1,368
2	성북구	장위동 **번지	11	1,959	1,175
3	성북구	장위동 **번지	18	3,043	1,826
4	성북구	장위동 **번지	11	1,867	1,120
5	강북구	미아동 **번지	10	1,000	600
6	도봉구	도봉동 **번지	8	303	182
7	양천구	신월1동 **번지	6	920	552
8	영등포구	도림동 **번지	12	963	578
9	은평구	수색동 **번지	15	2,630	1,578
10	성북구	상월곡동 **번지	5	550	330
11	도봉구	도봉동 **번지	8	192	115
12	성북구	장위동 **번지	8	880	528
13	성북구	정릉동 **번지	11	1,210	726
14	도봉구	쌍문동 **번지	14	1,540	924
15	영등포구	도림동 **번지	14	979	587
16	강서구	공항동 **번지	17	1,870	1,122
17	도봉구	쌍문동 **번지	19	1,830	1,098
18	구로구	고척동 **번지	20	2,200	1,320
19	양천구	신정동 **번지	20	2,000	1,200
계			238	28,216	16,930

※ 서울시 제출자료(2019.4.1)

- 대상 : 20면 이하(자치구에서 신청한 지역을 기준), 시구 매칭비율로 지원